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38호 2015. 9. 2. (수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5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97차) 2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720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4
- 하동군 공고 제2015-728호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8
- 하동군 공고 제2015-72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문 13
- 하동군 공고 제2015-744호 하동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23
- 하동군 공고 제2015-744호 하동군 시설물(최참관댁,이병주문학관,지리산생태과학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1
- 하동군 공고 제2015-750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43
- 하동군 공고 제2015-754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문 46
- 하동군 공고 제2015-756호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7

회 람									
----------------	--	--	--	--	--	--	--	--	--

하동군 고시 제2015-58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97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24.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시장길 21 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8.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3) 제 438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42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시장길 21	20150824	20070618	새로 생긴 길이고 시장과 인접하기 때문에 진교시장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640-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길 126	20150824	20070618	고이라는 법정리명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404-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공항길 8	20150824	20070618	신기마을과 공항마을을 지나가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933-1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영당2길 7	20150824	20070618	금천사를 세워 쌍계사에 모셨던 고운선생의 영정을 옮겨오면서 붙여진 자연 마을명에 일련번호 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502-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산서원길 28	20150824	20080402	옥산서원이 위치한다 하여 옥산서원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378-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구시장길 14-21	20150824	20080402	옛날부터 유명한 문암시장이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180-6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소송양달길 33	20150824	20080402	소송의 양달편 위아래에 있는 마을로 옛지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08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미산길 37-24	20150824	20080402	뒷산이 눈썹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785-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길 129-35	20150824	20080402	두방산과 두방재 아래에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295-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중대2길 63-14	20150824	20090302	중대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 마을명에 일련번호 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794-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한계길 177	20150824	20090302	옥산에서 흐르는 차고 맑은 물이 마을 앞을 흘러가므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725-5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문화3길 30	20150824	20091229	마을명에 일련번호 방식의 세번째 도로명 반영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1호의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추가 선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대상마을을 추가선정(안 제3조 별표 1호)

- 3개마을 추가(약양 미동·노전 마을, 옥중 양지(내회신)마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건설교통과,전화880-2392 FAX 880-2509 e-mail pjh@korea.kr)에 그 의견을 **【별지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6) 제 438 호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별지와 같이 추가한다.
 - 추가대상 : 악양 미동·노전 마을, 옥중 양지(내회신) 마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별표1(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별표1(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계	28	계	31
하동 흥룡리	먹점	하동 흥룡리	먹점
하동 두곡리	서제	하동 두곡리	서제
하동 두곡리	두곡(밤골)	하동 두곡리	두곡(밤골)
		악양 미점리	미동
악양 신흥리	하신흥	악양 신흥리	하신흥
악양 신흥리	상신흥	악양 신흥리	상신흥
악양 매계리	매계	악양 매계리	매계
		악양 매계리	노전
적량 관 리	관동	적량 관 리	관동
적량 관 리	율곡	적량 관 리	율곡
횡천 전대리	전대(윗전대)	횡천 전대리	전대(윗전대)
횡천 애치리	애치	횡천 애치리	애치
횡천 애치리	온동	횡천 애치리	온동
횡천 학 리	개인	횡천 학 리	개인
고전 범아리	매자	고전 범아리	매자
고전 성평리	신덕	고전 성평리	신덕
금남 대치리	대치(진구지)	금남 대치리	대치(진구지)
금남 진정리	금오	금남 진정리	금오
금남 계천리	계항	금남 계천리	계항
금성 궁항리	객길	금성 궁항리	객길
진교 고통리	남양	진교 고통리	남양
진교 송원리	화포	진교 송원리	화포
양보 장암리	우성	양보 장암리	우성
양보 지례리	가락	양보 지례리	가락
청암 종이리	심답	청암 종이리	심답
옥종 월횡리	고암(윗고암)	옥종 월횡리	고암(윗고암)
옥종 병천리	가덕(산성)	옥종 병천리	가덕(산성)
옥종 법대리	법대(외골)	옥종 법대리	법대(외골)
옥종 대곡리	동곡	옥종 대곡리	동곡
옥종 대곡리	한계	옥종 대곡리	한계
		옥종 회신리	양지(내회신)

※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승강장(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1km로서 주변마을, 도로, 주민불편 등 제반여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하동군 공고 제2015-728호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 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3. 주요 내용 :
 - 가. 제명변경 :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나. 목적과 용어의 뜻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리(안 제1조 및 제2조)
 - 다. 가축사육제한 지역·대상 및 예외 규정,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준수 사항 마련(안 제3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9월 15일까지 하동군(환경보호과, 전화880-2573, FAX 880-2569, jahasoo@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 이상의 가축사육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 표1과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여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 할 수 있다.

1.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 시설 등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사육을 하는 경우
2.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가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양성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개축 또는 기존 시설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축사의 청결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제4조(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양성화) 이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양성화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

하 동 군 공 보

(12) 제 438 호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 제1항 관련)

1. 주거밀집지역

제한지역	구 분	마리수	거 리
주거밀집지역	소·말·양(염소 등 산양 포함)·사슴	400마리 미만	50m
		400마리 이상	70m
	젓소	400마리 미만	75m
		400마리 이상	110m
	돼지·개	1,000마리 미만	400m
		1,000마리 ~ 3,000마리	700m
		3,000마리 이상	1,000m
	닭·오리·메추리	20,000마리 미만	250m
		20,000 ~ 50,000마리	450m
		50,000마리 이상	650m

(비 고)

1. “주거 밀집지역”은 가구간의 거리가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 수도시설 기준)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3. “마리 수”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축종별 마리당 축사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한다.
4. “거리”는 가구로부터 축사예정지까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상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2.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 련 법	내 용
수도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수변구역

하동군 공고 제 2015-729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문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 08. 21.

하 동 군 수

1. 목 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5. 08. 21 ~ 09. 09.(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5. 08. 21 ~ 09. 09.(20일간)
4.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하 동 군 공 보

(14) 제 438 호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지정면적 (㎡)	유형	등급		
고하지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698-1번지 일원	36,000	침수위험	나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 시 내부 배제 불량으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신규
나팔항지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899-5번지 일원	9,000	해일위험	나	해인고가 낮아 폭풍 해일 발생 시 범람으로 인한 주택 및 도로 침수	신규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고하지구	2017년 이후	3,726	배수펌프장 1식(65㎡/min, 700mm×1대), 유수지 V=2,500㎡	
나팔항지구	2017년 이후	1,121	월류방지공 L=90m, 재해완충지대 조성 L=403m	

※ 사업 시기는 현장 여건 및 예산(국·도비) 지원 계획 등에 따라 변동됨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청 안전총괄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 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 전 화 : 055) 880-2251 · 팩 스 : 055) 880-224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 임 : 1. 자연재해위험개선(예정)지구 정비계획 1부.

2.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고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신규) 현황>

I.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대상지구 개요

- 지구명 : 고하지구
- 위 치 :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698-1 일원
- 위험지구 지정개요
 - 유형 : 침수위험지구 / 등급 : 나
 - 지정면적 : 36,000m²

위험요인 및 피해주기

- 위험요인 : 지방하천 주교천 하류부에 위치하고 있는 고하지구의 제방고 및 하폭 부족, 내수 배제 불량으로 인하여 집중호우 발생시 피해
- 피해주기 : 4년(일우량 296mm, 최대시우량 64mm)

II. 과거 피해현황

과거 피해현황

일 시	피 해 개 요		조 치 사 항
	원 인	내 용	
2002.08.30. "태풍 루사"	제방월류와 내수 배수불량으로 인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홍수시 하폭 부족 및 유속증가로 인한 세굴발생	침수 후 주택 및 농작물 복구
2006.07.09. "태풍 에위니아"	제방월류와 내수 배수불량으로 인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홍수시 하폭 부족 및 유속증가로 인한 세굴발생	침수 후 주택 및 농작물 복구

하 동 군 공 보

(16) 제 438 호

□ 피해사진(피해기간 2002. 8. 30, 강우량 296mm, 최대시우량 64mm)



III. 현황

□ 지형도면



□ 현황사진(유역도, 침수지역 현황도 등)



IV.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 정비사업 추진계획

○ 사업량 : 배수펌프장(60m³/min, 700mm×1대), 유수지 V=2,500m³, 배수문 2개소, 배수로 L=250m

○ 사업비 : 3,726백만원(배수장공사 2,032, 유수지공사 1,249, 배수문공사 295, 배수로공사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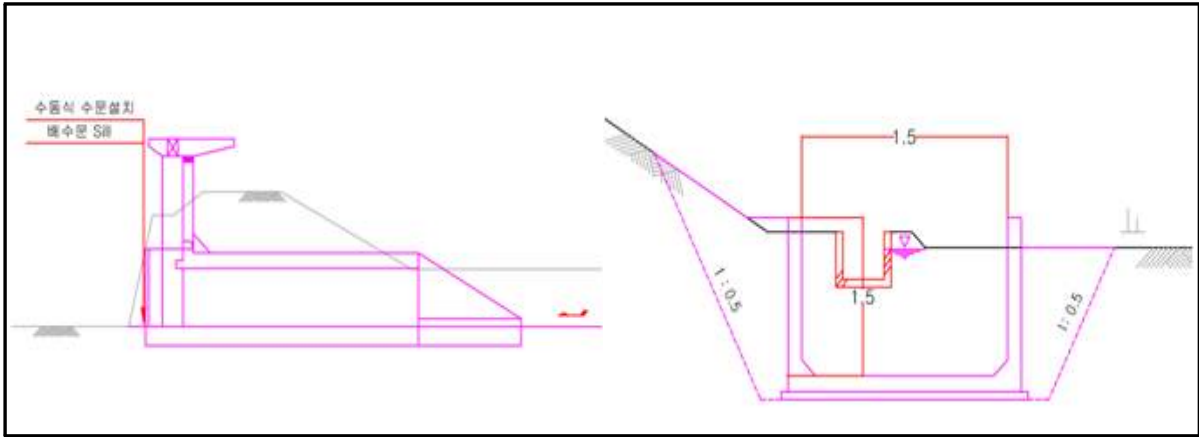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16년 까지	연차별 투자계획				
			17년	18년	19년	20년	
사업내용	배수펌프장, 유수지, 배수문, 배수로		용역비	공사비 및 보상비	공사비	공사비	
사업비	3,726	0	200	1,500	1,500	526	
국비	1,863	0	100	750	750	263	
지방비	1,863	0	100	750	750	263	

(18) 제 438 호

《사업계획 단면도》



□ 정비효과

- 인명보호 : 15세대 45명
- 건물보호 : 15동(주택 15동)
- 시가지 및 농경지보호 : 15ha(농경지 15ha)

<나팔항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신규) 현황>

I.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대상지구 개요

- 지구명 : 나팔항지구
- 위 치 :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899-5 일원
- 위험지구 지정개요
 - 유형 : 해일위험지구 / 등급 : 나
 - 지정면적 : 9,000m²

위험요인 및 피해주기

- 위험요인 : 해안고가 낮아 폭풍해일 발생 시 범람, 파랑, 월파로 인한 침수 피해
- 피해주기 : 4년(일우량 296mm, 최대시우량 64mm)

II. 과거 피해현황

과거 피해현황

일 시	피 해 개 요		조 치 사 항
	원 인	내 용	
2002.08.30. "태풍 루사"	해안고가 낮아 폭풍해일 발생시 범람, 파랑, 월파로 인한 침수 및 도로 침수	주택 침수 및 호안 세굴, 붕괴 발생	흙마대 및 일부구간 보축, 침수 후 주택 응급 복구
2006.07.09. "태풍 에위니아"	해안고가 낮아 폭풍해일 발생시 범람, 파랑, 월파로 인한 침수 및 도로 침수	주택 침수 및 호안 세굴, 붕괴 발생	흙마대 및 일부구간 보축, 침수 후 주택 응급 복구

하 동 군 공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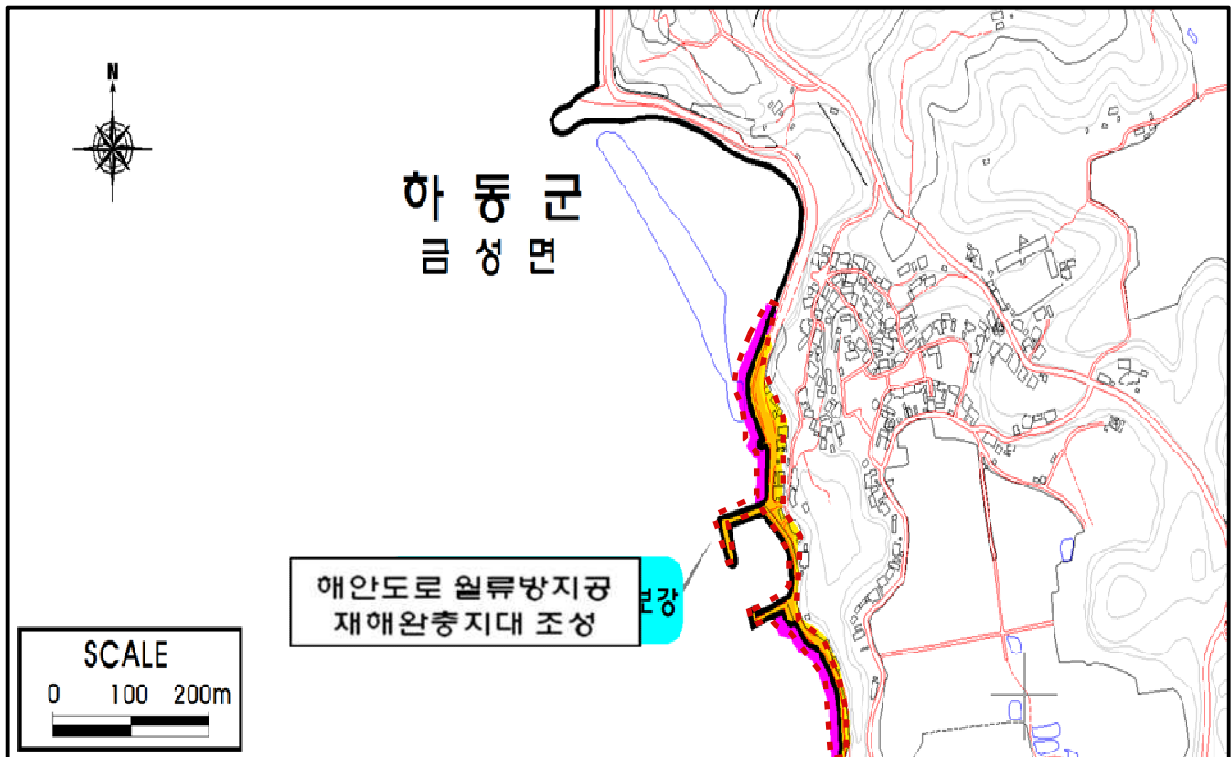
(20) 제 438 호

□ 피해사진(피해기간 2006.07.09, 강우량 296mm, 최대시우량 64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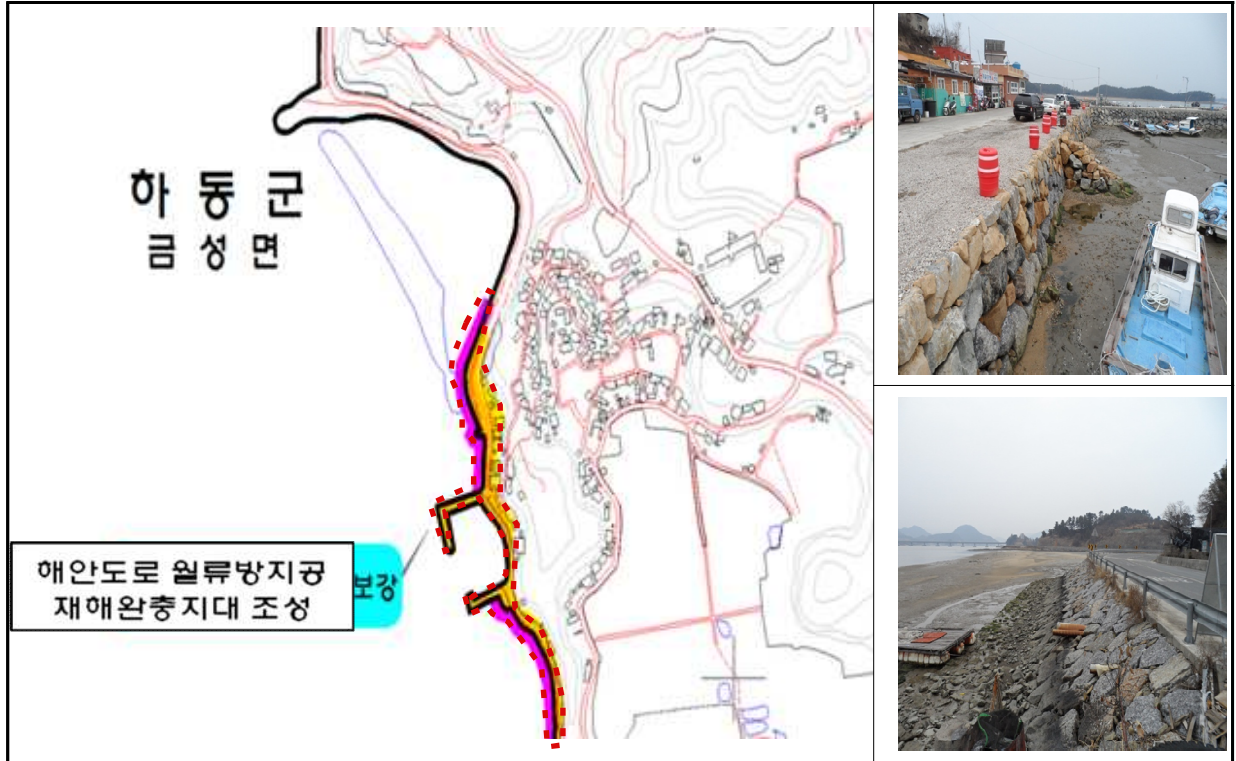


III. 현황

□ 지형도면



□ 현황사진(유역도, 침수지역 현황도 등)



IV.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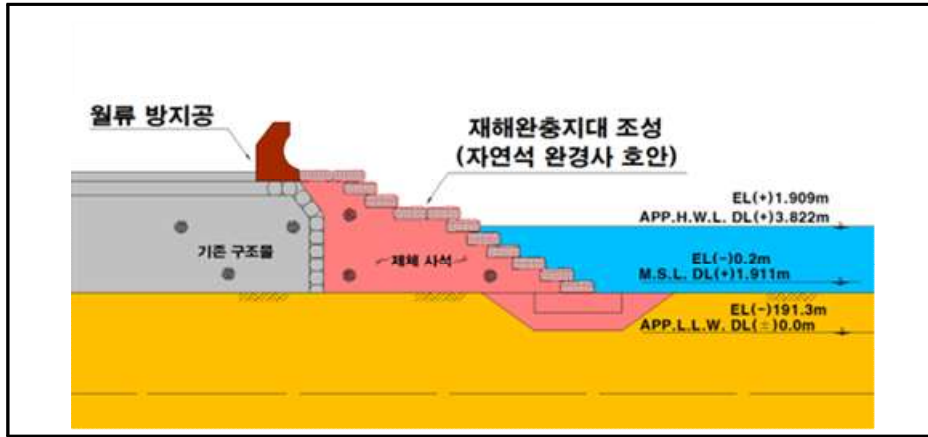
□ 정비사업 추진계획

- 사업량 : 월류방지공 L=90m, 재해완충지대 조성 L=403m
- 사업비 : 1,121백만원(월류방지공사 101, 재해완충지대 조성공사 1,020)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16년 까지	연차별 투자계획			
			17년	18년	19년	
사업내용	월류방지공, 재해완충지대 조성		용역비	공사비 및 보상비	공사비	
사업비	1,121	0	100	600	421	
국비	560.5	0	50	300	210.5	
지방비	560.5	0	50	300	210.5	

《사업계획 단면도》



□ 정비효과

- 인명보호 : 10세대 35명
- 건물보호 : 14동(주택 14동)
- 시가지 및 농경지보호 : 0.9ha(주거지 0.9ha)

하동군 공고 제744호

하동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을 폐지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8월 2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2. 제안 이유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05호, 2013. 12. 31 일부개정)」으로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마련되어
 - 전입신고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제정된 「하동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폐지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9월 15일까지 하동군(참조 : 민원과, 전화880-2123, FAX 880-2078, e-mail)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폐지규칙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2.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폐지규칙안

하동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26) 제 438 호

하동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제정) 1997.11.29 규칙 제835호

(일부개정) 2013.04.10 규칙 제1086호 하동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기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규108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13.4.10.규1086>

제3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 면으로 한다.

② 읍, 면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 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4.10.규1086>

제5조(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술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4.10.규1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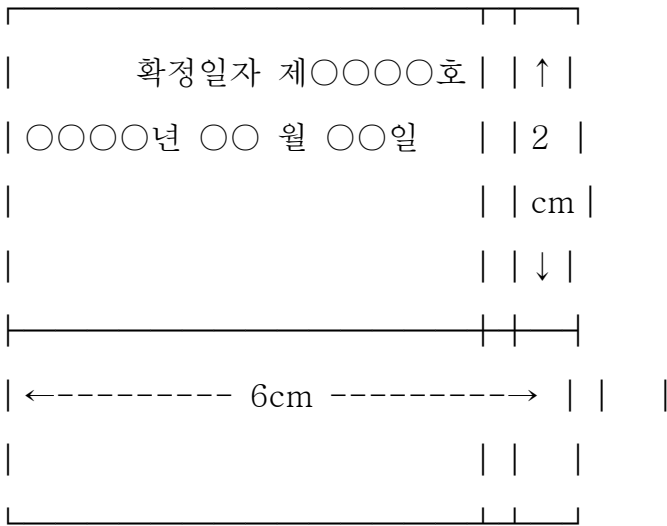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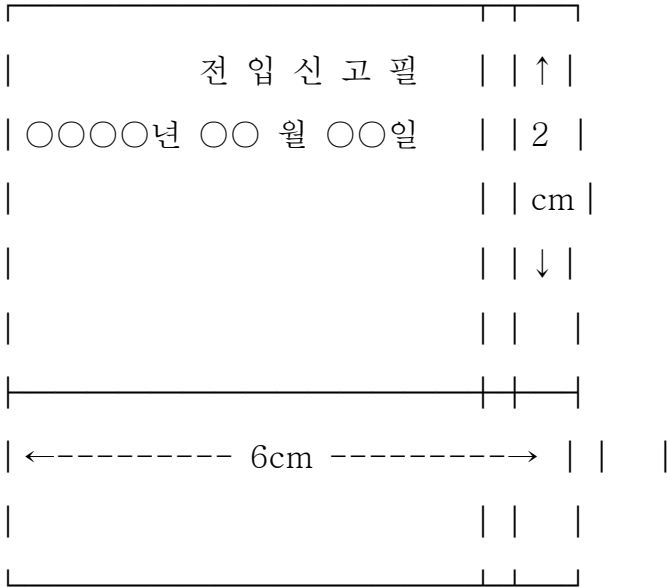
①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외 ○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② 해당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 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13.4.10.규1086>

- ③ 해당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개정 2013.4.10.규1086>
- 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음



경상남도 하동군 ○○읍면장 [직 인]

제7조(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해당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개정 2013.4.10.규1086>

제8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제9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는 1건당 600원으로 하고, 하동군 수입증지로 징구한다.

하 동 군 공 보

(28) 제 438 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 [법무부령 제805호, 201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의 소지인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여기관(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확정일자부여기관은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2.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
4.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있을 것
5.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을 것
6.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방법) ① 확정일자는 계약증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뒷면을 말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일자인을 찍고, 인영(印影) 안에 날짜와 제5조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확정일자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②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다만, 간인은 천공(穿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증서와 확정일자부 사이는 계인(契印)을 한다. 다만, 확정일자부여기관(공증인은 제외한다)이 제5조제5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한 확정일자부의 기재내용을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입력사항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확정일자번호는 신청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으로 적힌 확정일자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부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표준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증인이 작성하는 확정일자부는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⑤ 확정일자부여기관(공증인은 제외한다)이 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확정일자부 작성 시 이용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은 「주택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2호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말한다.

제6조(등기기록에 기록된 이해관계인의 범위)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를 말한다.

제7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2. 임대인의 동의서
3.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등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 이유

가. 중앙부처에서 자치법규에 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4조(운영) 제3항에 관한 사항 신설 : 위탁기간과 갱신히트 명시

나. 제8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일부 삭제

: 사용자 손해가 있을 시 군수가 배상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부분

다. 제20조(관람권의 발행) 제1항에 관한 사항 수정

라. 제20조(관람권의 발행) 제2항에 관한 사항 삭제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15일까지 하동군(참조 : 문화관광실, 전화880-2384, FAX 880-2369, spook036@korea.kr)에 **【별지 서식】** 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①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관람권을 발행 할 수 있다.

제20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운영) ①·② (생략) <u><신설></u></p> <p>제8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u>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가 이에 따른 배상을 책임지지 아니한다.</u></p> <p>1. ~ 7. (생략)</p> <p>제20조(관람권의 발행) ① <u>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하게 할 수 있다.</u></p> <p>② <u>매표용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u></p> <p>③ (생략)</p>	<p>제4조(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u></p> <p>제8조(허가의 취소 등)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20조(관람권의 발행) ① <u>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u></p> <p><u><삭제></u></p> <p>③ (현행과 같음)</p>

하동군 공고 제2015-749호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 이유

가. 중앙부처에서 자치법규에 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4조(운영관리 및 위탁) 제4항에 관한 사항 신설
: 위탁기간과 갱신횟수 명시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15일까지 하동군(참조 : 문화관광실, 전화880-2384, FAX 880-2369, spook036@korea.kr)에 **【별지 서식】** 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 붙임 1.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경상남도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문학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4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문학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 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 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u>

하동군 공고 제 2015-749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 이유

가. 중앙부처에서 자치법규에 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4조(운영관리) 제2항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 위탁기간과 갱신횟수 명시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15일까지 하동군(참조 : 문화관광실, 전화880-2384, FAX 880-2369, spook036@korea.kr)에 **【별지 서식】** 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 붙임 1.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경상남도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운영 관리) ① (생 략)</p> <p>②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제4조(운영 관리) ① (현행과 같 음)</p> <p>②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p>

하 동 군 공 보

(42) 제 438 호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1995.1.25>

하동군공고 제2015-750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일

하 동 군 수

읍면	도로의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km)	주요경과지	개발계획		지정(폐지·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m)	포장너비(m)	
화개면	리도	용모선	205호	화개면 용강리 462	화개면 용강리 산11-5	3.0	화개면 용강리 842-2	5	4	모암마을 도로정비 공사시행

- 주 : 1. 도로의 종류란에는 면도, 리도, 농도를 기입
 2. 기점·종점란에는 당해 지번을 기입
 3. 노선지정도는 축적 1/500 내지 1/1,200의 지형이 포함된 지적도에 작성

21305-01011일

92.4.6 승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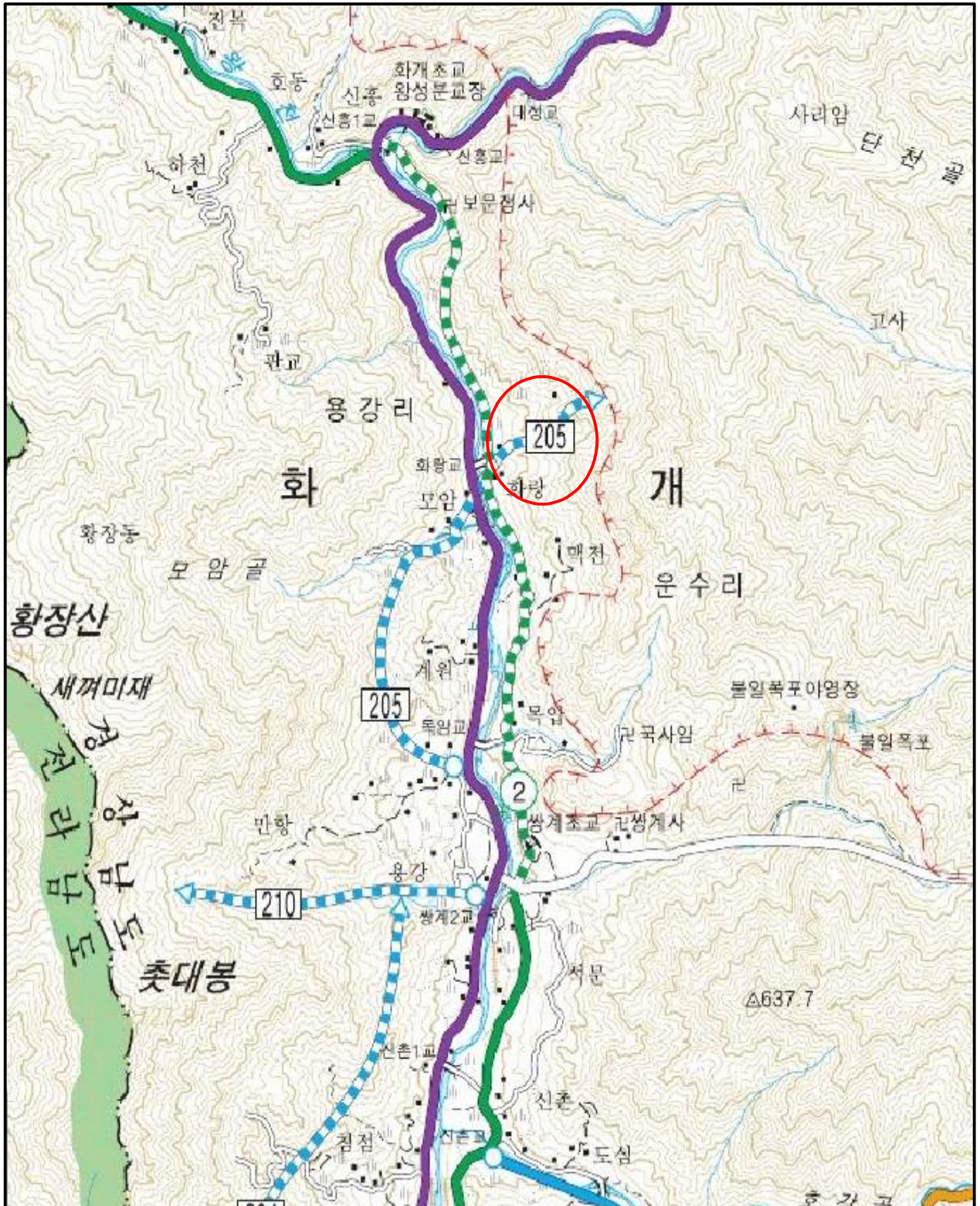
하 동 군 공 보

(43) 제 438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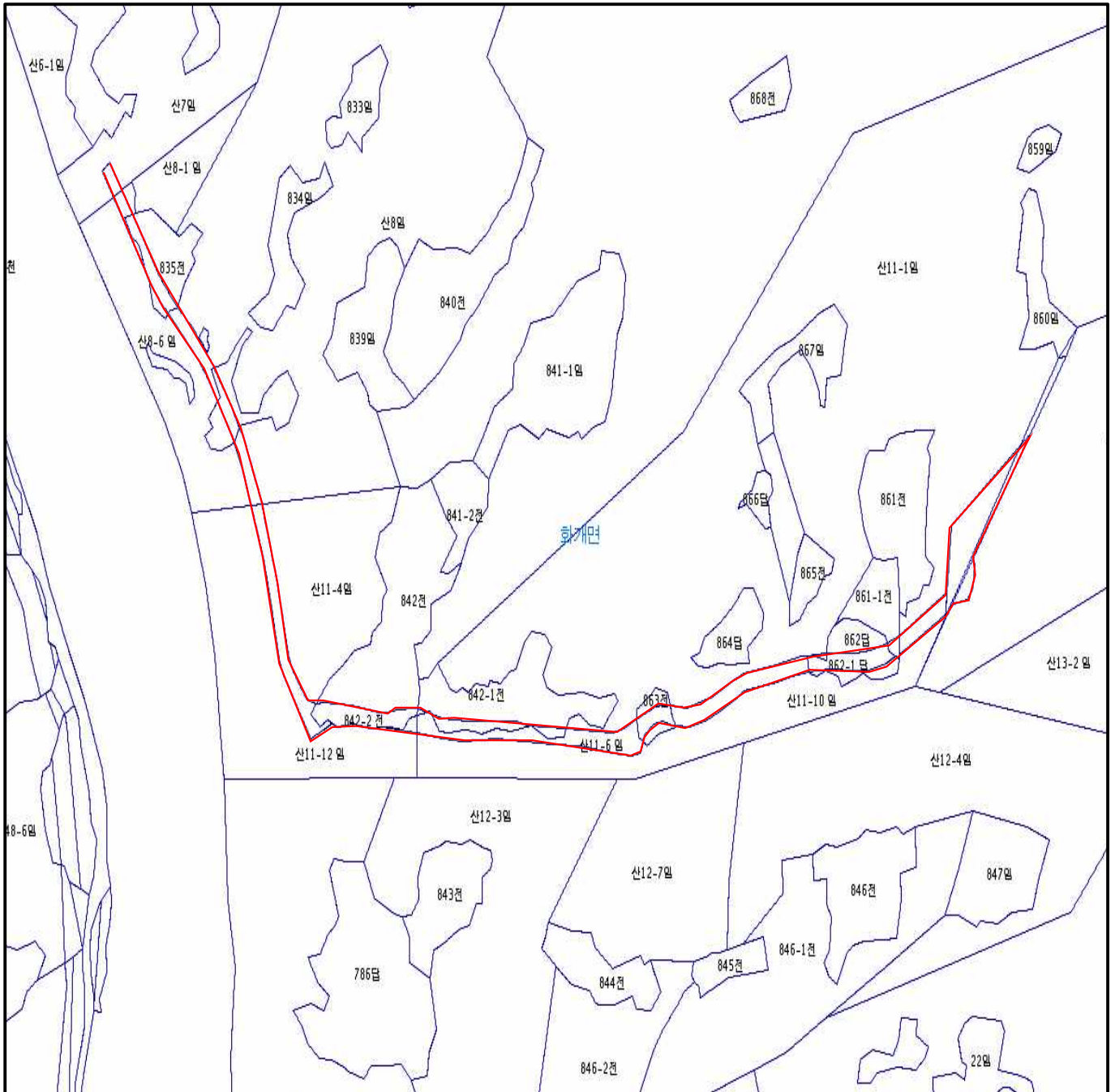
노선지정 토지의 세목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비고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산7-1	임야	36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산8-3	임야	42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산8-4	임야	108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산8-5	임야	86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835-1	전	122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838-1	임야	66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산11-6	임야	355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산11-7	임야	285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산11-8	임야	6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산11-9	임야	105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842-3	전	4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842-4	전	141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861-2	전	21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862-1	답	165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863-1	전	77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산13-3	임야	56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842-2	전	219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산11-13	임야	21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산11-11	임야	303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산11-5	임야	331	

위 치 도



도로의 노선 지정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문

○ 2015년 7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 기 간 : 2015년 9월 2일 ~ 9월 30일
- 장 소 : 군청 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5년 9월 2일 ~ 9월 30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 군청 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민원실
- 제출방법 : 군,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055-880-2122~6)

2015년 8월 28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 2015-756호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로 정해진 조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자 등록에 관한 조항 삭제(제12조)

나. 자원봉사자 등록 취소에 관한 조항을 자원봉사 경력 및 실적 인정에 관한 조항으로 개정(제16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5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 : 국제통상과, 전화 880-2242, FAX 880-2869, e-mail : tiamo770@korea.kr)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자원봉사자의 등록·교육훈련·배치 등”을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배치 등”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경력 및 실적인정 등) 군수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50) 제 438 호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등록)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p> <p>제16조(등록취소)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활동 수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 하였을 경우 2. 자원봉사활동경력증서를 거짓으로 기재, 발급하거나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 3.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개인 및 단체가 자원봉사와 관계없는 사업을 추진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품위유지에 손상을 입힐 경우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6조(경력 및 실적인정 등) 군수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p>